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255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구자근 · 강승규 · 김선교
박형수 · 최수진 · 박준태
정점식 · 김도읍 · 강명구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지원 등) ① 국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14조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9조의5(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지원 등) ① 국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14조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다.</u></p> |